

비씨카드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</p> <p>6. "접근매체"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.</p> <p>나. 「전자서명법」에 따른 전자서명 생성정보 또는 <u>공동인증서</u>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<u>①</u>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</p> <p>6. (좌 동)</p> <p>나. 「전자서명법」에 따른 전자서명 생성정보 또는 <u>인증서</u></p>	<p>- 제1항 추가</p> <p>- 공동인증서 정의 변경</p>
<p>제5조(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) <u>②</u>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씨카드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.</p> <p>2.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(이하 "공인전자서명"이라 한다)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) 동의를 얻은 경우</p>	<p>제5조(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) <u>②</u> (좌 동)</p> <p>2.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(「<u>전자서명법</u>」 <u>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, 이하 "전자서명"이라 한다)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</u>) 동의를 얻은 경우</p>	<p>- 개정 전자서명법 부칙 제7조 내용 반영</p>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<p>제9조(추심이체의 출금 동의) <u>①</u> 비씨카드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</p> <p>1. 비씨카드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(공인전자서명 또는 비씨카드가 정한 기타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.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.)이나 전화녹취(ARS를 포함한다)에 의하여 출금 신청을 받는 방법</p>	<p>제9조(추심이체의 출금 동의) <u>①</u> (좌 동)</p> <p>1. 비씨카드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(<u>비씨카드가 정한 전자서명이</u>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.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.)이나 전화녹취(ARS를 포함한다)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</p>	<p>- 공인전자서명 삭제 및 문구 정비</p>
<p>제10조(거래의 제한) <u>②</u>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씨카드는 사전 안내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.</p> <p>5. <u>공동인증서</u>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<u>공동인증서</u>가 취소된 경우</p>	<p>제10조(거래의 제한) <u>②</u> (좌 동)</p> <p>5. <u>비씨카드가 정한 인증서</u>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<u>비씨카드가 정한 인증서가</u> 취소된 경우</p>	<p>- 공동인증서 삭제 및 문구 정비</p>